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국가자원보호특별법시행령  
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br>(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4.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함

나.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2)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자원안보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13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0조)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에(이하 “통합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게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2)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음

바.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안 제11조)

- 1)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하여야 함
- 2)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공급망 점검·분석(안 제12조)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게 할 수 있음

2)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아. 비축(안 제16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으로 함

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차.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안 제32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안 제37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00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

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
3.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1명
4. 환경부차관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7. 해양수산부차관
8. 중소벤처기업부차관
9.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1명
10. 관세청장
11. 조달청장

## 12. 통계청장

###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명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문서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에 회의록 또는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⑩ 위원장은 자문단을 핵심자원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비축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관한 지원

2. 자원안보 분야의 국내외 기술·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 관련 지원

5. 법 제25조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관련 지원

7. 법 제36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

8.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연구·조사
9.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홍보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해외자원개발협회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 내지 제9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상근직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전담기관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규정을 갖출 것

4. 전담기관업무 관련 업무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조직·인력 및 시스템 현황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운영규정

3. 전담기관업무 추진계획서

4. 정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8조(전담기관의 행위준칙 등) ①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전담기관업무와 관련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자신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의 이익 등을 위해 전담기관업무 수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전담기관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전담기관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료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전담기관의 전담기관업무 수행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담기관이 지정받은 핵심자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에서 제외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더 이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시행
  3. 통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의 가격,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출·수입량

2.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생산·수출·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 등 현황

3.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

4. 국제기구·외국정부의 핵심자원 관련 제재·규제·정책에 관한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우 제6조제3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협의회, 자문단 및 전담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과 자원안보 관련 다른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이하 이 조에서 “자원안보 진단·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자원안보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평가 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보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제7항에 따른 시정·

보완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자원안보 진단·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공급망 점검·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망 점검·분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망 점검·분석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망 점검·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공급망 점검·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 공급망 점검·분석 내용

4. 공급망 점검·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한 시정·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공급망 점검·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항에 따른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시정·보완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보완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공급망 점검·분석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및 공급망 구축 지원) 정부는 법 제1

2조제1항에 따라 안정적인 핵심자원 개발·구매·조달 및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에게 재정, 금융,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경우에는 미리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구매·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거부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이행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국내외 공급기반시설 설치·확충
2.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의 설치·확충
3. 핵심광물 탐사·개발·생산·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융자·보험·보증 등 금융 지원
4. 핵심광물 탐사·개발·생산·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16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축기간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이하 “자원안보위기 경보”라 한다) 해제 시까지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공급기반시설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비축의무기관의 비축물자 구매, 보관, 비축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7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의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실태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비축의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은 그 기간, 방법,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비축의무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정한다.

제19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문단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20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시설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사·탐사·생산 활동을 통하여 핵심자원의 위치·매장량·생산량·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광산

2. 제1호의 광산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한 경우 그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비상동원광산의 운영·관리 기준) ① 채굴권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비상동원광산이 핵심자원을 안정적으로 생산·가공할 수 있을 것
2.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시설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운영될 것
3. 비상동원광산이 「광산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  
것

4. 비상동원광산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비상동원광산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채굴권자 등에게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  
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  
다.

1. 채굴권자 등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비상동원  
광산을 운영·관리하는 경우

2. 비상동원광산이 생산·가공하는 핵심자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핵심자원에서 제외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더 이상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18조제1항의 시책(이하 “재  
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  
한 사항

2.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  
항

3.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시장·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가. 재자원화산업 진흥시설

나. 재자원화산업 관련 시험·분석, 연구개발 및 실증화 시설

다. 재자원화산업 및 재자원화연관산업 기업의 집적단지

라. 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5.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운영계획

6.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기반시설 확보계획

7.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 유치계획

8.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촉진 등 지원계획

9.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전문운영기관

③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이 가능할 것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재자원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전문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주요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재자원화산업클러

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그 밖에 핵심자원 대체물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핵심자원의 품목
2.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시급성·필요성

3.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

4.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시설·장비 등 확보 계획

제27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생산·전환·가공·수송·저장·판매하기 위한 시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핵심자원을 국내로 수입·수송·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을 설치·확충·유지·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용도를 폐지한 시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보안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 예방·대응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2.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즉시 탐지·대응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운영할 것.

3.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진단·점검을 실시할 것.

4.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것.

5.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6. 공급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 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릴 것.

7.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8. 자원안보를 침해하거나 자원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자의 사이버공격·위협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기관과 정보협력(「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다.)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축·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확충·유지·관리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경우에는 미리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그 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이행 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출·수입량
4.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부품·제품의 재고·수급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핵심공급기관 지정의 대상
2. 핵심공급기관 지정의 사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과의 대체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전망 및 수출·수입량

4.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부품·제품의 재고·수급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핵심수요기관 지정의 대상

2. 핵심수요기관 지정의 사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수준별로 발령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 대상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대상 공급기관에게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훈련 대상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 물량·가격·시기·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반입 대상 핵심자원, 반입 물량, 반입 가격 및 반입 시기를 적은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반입명령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실효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

행 여부,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비축자원의 방출·사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자원을 방출·사용하도록 조치(이하 “방출·사용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대상 물량·가격·시기·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방출·사용조치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출·사용조치의 실효성, 비축의무기관의 방출·사용조치 이행 여부,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굴권자 등에게 핵심자원의 생산·가공을 개시·확대하거나 생산·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하도록 명령(이하 “생산 등 명령”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대상 물량·가격·시기·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해당 채굴권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

하려는 경우 생산 등 명령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 등 명령의 실효성, 채굴권자 등의 생산 등 명령 이행 여부,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채굴권자 등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2.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3. 특정 시설 또는 특정 기자재에 사용될 핵심자원의 지정 및 대체

②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2.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실증과 성능검증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수급안정조치”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대상 물량·가격·시기 등 조건에

관하여 해당 공급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수급안정조치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급안정조치의 실효성, 공급기관 등의 수급안정조치 이행 여부,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공급기관 등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이하 “최고액 지정”이라 한다)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최고액 지정의 실효성, 공급기관의 최고액 지정 이행 여부, 손실보상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제28조제2항·제29조제3항·제30조4항·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0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부과금의 감면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 또는 부담금의 부과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핵심자원의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자원안보 국제협력) ①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정부, 전담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초청연수과정 운영
2.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 전문가 등의 공급망 관련 국제기구 등에 파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정부는 영 제36조제1항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 1호와 2호에 필요한 장학사업 및 시설·장비 구축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법 제 39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공공공급기관
3.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

##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3 - 5251 |